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 추경호·강기윤·강대식

강민국・곽상도・구자근

권명호 · 권영세 · 김기현

김도읍・김미애・金炳旭

김상훈 · 김석기 · 김선교

김성원 · 김승수 · 김영식

김예지 · 김용판 · 김 웅

김은혜 · 김정재 · 김태흠

김형동 · 김희곤 · 김희국

류성걸 • 박대수 • 박대출

박덕흠 • 박성민 • 박성중

박수영・박완수・박 진

박형수 • 배준영 • 배현진

백종헌 · 서범수 · 서병수

서일준 · 서정숙 · 성일종

송석준 · 송언석 · 신워식

안병길 · 양금희 · 엄태영

유경준 • 유상범 • 유의동

윤두현 • 윤영석 • 윤재옥

윤주경 • 윤창현 • 윤한홍

유희숙 • 이달곤 • 이만희

이명수 · 이양수 · 이 영

이 용 · 이종배 · 이종성 이주환 · 이채익 · 이철규 이헌승 · 임이자 · 장제원 전봉민 · 전주혜 · 정경희 정동만 · 정운천 · 정점식 정진석 · 정찬민 · 정희용 조경태 · 조명희 · 조수진 조태용 · 조해진 · 주호영 지성호 · 최승재 · 최춘식 최형두 · 태영호 · 하영제 하태경 · 한기호 · 한무경 허은아 · 홍문표 ·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(103인)

### 제안이유

코로나-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.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.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바, 대책마련이 시급함.

현행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 차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도 록 되어 있음. 그러나 코로나-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 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.

이에 제11조의 "경제 사정의 변동"에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"을 추가해 자영업자 의 코로나-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 코로나-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하여, "경제사정의 변동"을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"으로 변경함(안 제11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"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"을 "증감이나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①	제11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①
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	
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	
부담의 <u>증감이나 경제사정의</u>	<u>증</u> 감이나, 「감염병의
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	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	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
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	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
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	
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	
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	